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0
----------	------

제출일자 : 2018. 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8553호, 시행 2018.4.19.)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
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의 제
출 대상 용도” 항목 신설(안 제2조의2)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항목에 “음식
판매자동차”를 신설 및 “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안 별표3)
-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과 “현수막”에 설치 개수 당 부과기준
을 명확화(안 별표6)

-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서식 변경 등 안 별지 제2호 부터 제4호, 안 별지 제6호,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 간단한 자구의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 (3) 부패영향평가 :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

(나) 예고결과 :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별표 3, 별표 6,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기 준</th><th>수수료</th><th>비 고</th></tr><tr><td>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td><td>-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 설)</td><td>400,000원 10,000원 2,000원</td><td></td></tr><tr><td>파. 현수막 1) 현수막</td><td>-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td>3,000원 1,000원</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 설)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기 준</th><th>수수료</th><th>비 고</th></tr><tr><td>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td><td>-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td><td>400,000원 10,000원 2,000원</td><td></td></tr><tr><td>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td><td>-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td>3,000원 1,000원</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광고물등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 설)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광고물등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2만원 17만원 2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33만원 42만원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67만원 92만원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에 3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0.5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 산한 금액	130만원+가산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7만원 10만원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7만원 25만원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0만원 58만원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에 3제 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 곱미터당 8만 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가산금액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 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 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개당 12만원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개당 35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67만원 개당 92만원 개당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에 3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0.5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 산한 금액	개당 130만원+가산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개당 7만원 개당 10만원 개당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50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에 3제 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 곱미터당 8만 원을 가산한 금액	개당 80만원+가산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삭 제)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기 간	
장 소 ()	
 달 성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달 성 군 수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기간 :	
장소 :	
 달 성 군 수 	

- 현 수 막 : 가로 10센티미터 X 세로 7센티미터 이내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X 세로 3.5센티미터 이내

※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달 성 군 수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 사 구 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 검 결과 []합격 []불합격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 사 구 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 검 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 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 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